

광주지방법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544894 판결 [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

담당변호사 김학수, 윤희준, 한지영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24. 11. 6.

판결 선고2024. 11. 27.

주 문

1. 피고 A는 원고에게 111,158,118원 및 그중 111,158,012원에 대하여 2024. 2. 8.부터 2024. 8. 21.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2023. 6. 21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 B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3. 6. 21. 접수 제85582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A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2. 피고 B에 대한 청구

가. 인정사실

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- 1) 피고 A는 원고의 보증 하에 2020. 8. 24. 주식회사 C(이하 'C은행'이라 한다)으로부터 1억 2,000만 원을 대출받았다.
- 2) 2023. 8. 19. 위 대출금의 원금 상환이 연체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원고는 2024. 2. 8. C은행에 111,641,91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483,906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이 111,158,012원이 남아 있다.
- 3)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3. 6. 21. 피고 B와 채권최고액을 5,8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3. 6. 21. 접수 제8558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등기'라 한다)를 피고 B

앞으로 마쳐주었다.

나. 판단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,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 B은, 피고 B이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 B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 B이 2022. 5. 3. 피고 A에게 4,9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위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하여 피고 A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,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재석

별지